

인천지방법원 2021. 6. 18 선고 2020가단2030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

담당변호사 김희재

변론 종결 2021. 5. 14.

판결 선고 2021. 6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1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3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, 이자는 연 13%로 정하였으므로, 피고는 대여금 합계 11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변제일인 2017. 9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.

순번	일자	차용 금액 (원)	변제 금액 (원)
1	2014. 4. 7.	15,000,000	
2	2015. 8. 25.	10,000,000	
3	2015. 11. 30.	3,000,000	
4	2015. 12. 27.	13,000,000	
5	2016. 3. 7.	5,000,000	
6	2016. 5. 13.	2,000,000	
7	2016. 9. 20.	25,000,000	
8	2016. 11. 8.	40,000,000	
9	2017. 9. 28.		20,000,000 (이자)
	합계	113,000,000	

2. 판단

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,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(대법원 1972. 12. 12.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),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금전의 이체행위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송금 당시의 제반상황 및 이체의 경위, 당사자들의 관계 등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
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, 갑 제8, 9호증, 제14호증, 을 제4, 10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포함)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- 1) 원고는 C의 친구이고, 피고도 C의 지인으로, 원고와 피고는 각자 C와 친분관계가 있을 뿐 원고와 피고 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.
- 2)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, 구체적인 변제일시도 정하지 않았으며, 이자율을 13%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.
- 3) 원고는 2014. 4. 7.부터 2016. 11. 8.까지 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바,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한 번도 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담보 등의 변제 확보조치 없이 계속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, 2019. 6.경 피고와 C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보이지 않는다.
- 4) 원고는 피고를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고소하였으나,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.
- 5) 원고는 위 고소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C이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C을 믿고 빌려 준 것이어서 차용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원금 상환기간이나 이자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,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의 신용또는 변제능력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- 6) 원고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4를 제시하며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, 갑 제6호증의 1 내지 4는 문자메시지 원본이 아닌바,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C에게 그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효정